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

제출일자: 1998. 4. 7.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사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중 감면대상 자동 차의 종류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 화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중 감면 자동차의 용도 확대(안제2조제2항)
 - 당초 : 보철용
 - 개정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 □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제2조제2항,제4조제1항)
 - 당초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
 - \circ 개정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 개정근거

□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 (경남도 세정13400 ~ 177('98. 3. 16))

거창군세감면조례 개정내용

개 정 조 문	개 정 내 용	비고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의 용도 확대 ▷ 당초 : 보철용 ▷ 개정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 ▷ 당초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 ▷ 개정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증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 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에 별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 세를 감면함. 	
제3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 ▷ 당초: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 ▷ 개정: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4.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 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행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 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 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 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다.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차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 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 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증명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신 설 >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d \ \d \ \ \ \d \d	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
	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 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자동차페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된 자동차.

혅 했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 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 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 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 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 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 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신 설>

개 정 óŀ

감면) ① ----

자동차로서 해당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현행과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된 자동차